

제348회 정례회  
2016. 6. 8.(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출 자 : 박봉순 의원 등 7명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6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 3.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

- 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함.
- 나. 위탁운영 관련 위탁기간 및 위탁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위탁기간 : 5년으로 하되 일회 갱신 (다만 수의 계약 시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 다.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재산 및 시설물 관리, 시설증개축 도지사승인, 시설물 훼손 시 손해배상 등
- 라. 조사 또는 검사, 위탁의 취소, 수익사업, 자체운영규정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부칙
  - 적용례 : 위탁기간 5년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운영 하는 자부터 적용.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개정하고 위·수탁 관련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안에서 규정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기존 “충북도 내 거주 60세 이상 노인”에서 “이용대상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였음. 이는 복지관 부부 이용자의 확대 및 편의 도모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노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함.
  -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 대상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현재 충청도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복

지시설(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안 제10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수탁기관(법인)이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제3항과 관련된 [별표]에서는,

강당, 교육실, 회의실, 식당의 사용료(이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사용료 중 이·미용실 사용료를 제외하였음.

- 복지관의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노유자 시설로서, 이·미용(제1종 근린생활시설) 영업행위 제한에 해당되는 바,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봉사 개념의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기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본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며,
  - 노인종합복지관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서는 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국장,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지역 사례에도 없는 관의 과도한 운영개입으로 오히려 민간위탁의 긍정적 요소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정한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음.

####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로 정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고, 위탁기간 5년 규정은 소급이 아닌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운영을 하는 자로 규정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도 담당 부서 및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인 기관과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고 입법예고 및 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작성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자료>

### □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현황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 (사직1동)
- 시설규모 : 부지 11,985㎡ / 건축 4,023.78㎡ (지하1층, 지상3층)
- 운영주체 :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 유선규, 관장 심의보)
- ※ 위수탁 계약 (3년, 공개모집) : 2014. 1. 13 ~ 2017. 1. 12

- ▷ '98. 4. 17일 개관 ('97. 12. 14 준공)
- ▷ 도 노인회 위탁 : 2년 주기 3회 (수의계약)
  - 1차 ~ 3차 : '99. 1. 13 ~ '05. 1. 12 (6년)
- ▷ 학교법인 충청학원 위탁 : 3년 주기 3회 (공개모집)
  - 4차 ~ 6차 : '05. 1. 13 ~ '14. 1. 12 (9년)